

춘천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33218 판결 [건물명도등]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33218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5. 22 선고 2023가단16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10. 17.

판결선고 2024. 12. 12.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5. 22. 선고 2023가단1653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E, D호를 인도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5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3. 11. 28.부터 제1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배성준, 판사 허경은